

아동과 청소년의 법 의식 조사 : 법 인지, 법 정서와 법 수행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안경환 · 문용린 · 황경식 · 이순형

서울대학교 법학과 · 교육학과 · 철학과 · 소비자 아동학과

아동 및 청소년들의 법 의식을, 법 지식, 법 정서 및 법 수행으로 나누어 셋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199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00명과 대학생 147명으로 모두 634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법 용어와 연관된 용어를 통해 응답자들을 법의 집행성, 보편 공정성, 당위성, 용보성과 강제성을 연상 하였는데 특히 법의 강제성과 용정성을 높게 연상했다. 응답자들은 법을 세 가지 특성, 즉 법의 불변성, 계약성과 개인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제도로서의 부정적 특성으로 개념화한다. 법에 대한 부정적 인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증가한다.

법 정서를 법 집행 제도에 대한 신뢰감과 소외감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법을 집행하는 대행자 각각에 대한 신뢰감을 달리 가지고 있으며 신뢰감은 연령과 거주지 및 사회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법적 소외감,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과 법 수행감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법 제도 안에서 스스로 대처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나 공식적 교육기관에서 살아있는 법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 법인지 · 법정서 · 법수행 · 법소외감

I. 문제 제기

한국사회가 민주사회로 진입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민주화가 정치 제도상의 외양으로만 갖추어졌을 뿐 실제 내적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의 내면화는 시민들이 사회에서 합의된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 교량 및 백화점의 붕괴 사고 등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는 규칙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서 유래한다.

왜 법을 지키지 않는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가, 법이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도구가 아니라 큰 제도상의 체제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아동들과 청소년들은 이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에 대한 다른 인식이 법을 지키지 않

도록 하는지도 모른다. 법을 가진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법을 불신하여 고의로 법을 경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는가, 법이 가진자편에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보듯 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으며 법에 대한 정서도 법 인식의 한 부분으로서 개인의 법 수행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인식은 그저 단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부터 사회화를 거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법 인식이 그러하다면 다른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법에 대한 인식도 법에 대한 지식과 정서가 혼합된 것으로 개인이 사회 문제 상황을 지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법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들의 법 지식이나 법 정서와 법 수행에 대한 연구가 두 편(이수성, 1984; 임희섭, 1974)에 불과하며 도덕성과 관련지은 부분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강윤정, 1991; 문용린, 1991; 이순형, 1994). 전자 연구가 성인이나 청소년들의 법의식 실태를 조사한 것이고 후자는 도덕성 발달의 맥에서 법에 대한 인지를 살펴 본 것이다. 이수성과 임희섭의 연구도 1974년, 1984년에 십 년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1990년도에는 아직 실태도 조사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이 주로 조사한 대상은 대학생에 국한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동기 및 사춘기를 포함한 청소년기에 법 지식과 인식 현상은 파악되지 못했다. 또한 법 사회화가 법 지식뿐 아니라 법 정서와 법 수행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 의식과 정서의 일부 항목의 조사에 그쳐서 실상 통합적 차원에서 법 사회화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시급하여 심층적 논의가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990년대 아동 및 청소년들의 법 의식을, 법 지식, 법

정서 및 법 수행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셋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려고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법과 관련된 삶의 체험이 곧 법의식의 양태를 결정한다. 법 사회화란 바로 법과 관련된 체험의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들간에 도출된 약속인 규율과 법을 배우는 것은 일종의 사회학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 사회화는 인지 발달적 관점과 사회학습이론적 관점의 두 가지 이론적 관점 이외에 장(場)이론이 있다.

1. 법 사회화의 이론적 관점

법 사회화는 우선 사회인지 발달 이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아동의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서 규율을 학습하는데 처음에는 규율을 자기 쾌락적 측면에서만 인지하지만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차츰 타인과 집단의 관점에 설 수 있게 되어 규율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규율의 집단 기능적 측면을 이해하려면 Piaget가 주장하듯이 전조작기에서 벗어나야 하며 구체적 조작기가 되어야만 한다. 규율의 이해가 증진되는 것도 규율의 타율적 제재기능만 강조하다가 더욱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규율의 자율적 제재기능을 이해하게 된다.

인지발달적 관점은 Kohlberg(1979)의 도덕성 발달연구로 이어지는데 그는 법의 사회질서 유지 기능에 대한 인지를 규범적 인지수준에서 나타나는 도덕성 발달로 보고 있다. 오늘날의 법 사회화의 인지를 다루는 경우는 이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도덕성 발달 연구의 연속상에서 Rest(1983)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가 이어졌으며 국내에서 문용린과 강윤정의 연구도 이 맥락에서 있다. 강윤정은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Koh-

lberg의 도덕성발달 연구 상황에서 규칙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분석하여 보고했다. 이외에 성인과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관련지위 법과 규칙의 문제(강윤정, 1991)를 조사했거나 부분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문용린, 1991; 이순형, 1994).

둘째로 법 사회화를 다루는 이론적 관점은 사회 학습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은 학습이론이 원래 주장한 바 인간 개체의 행동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강화를 받은 반응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결국 습관을 형성한다는 원리를 수용한다. 그와 동시에 외부의 직접적 자극과 강화라는 과정 없이 관찰만으로도 사회적 행동이 학습된다는 관찰학습이론으로 포괄한다. 사회학습이론은 Bandura의 사회정보의 유입, 파지, 인출, 수행의 단계로 일단 유입된 정보가 능터라도 상황이 맞으면 저장된 정보를 인출하여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위 두 가지 이론은 법 사회화의 다른 측면을 설명하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가 법 기능인지와 법과 사회제도간의 관계나 개인의 존재와 법의 한계 등의 법 철학적 논제에 대한 인지 발달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왜 법의 그 문항이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설명해 준다.

그런데 동일한 인지 단계에서 교과서적으로 법의 기능과 한계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에 대한 인식과 법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법 인식이 법적 체험을 통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법에 대한 원론적 개념은 별개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본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법 의식이 다를 수 있다. 이는 사회현장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속해 있는 환경의 공간이 다른데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심리적 공간이 다를 수 있다. 공간이 다르면 체험이 달라진다는 것은 장(場) 이론이 주장하는 바다. 사람마다 체험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서 다른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받아들이다면 장이 다른 까닭으로 얼마나 다른 의식의 세계에 머물 수 있을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 정도가 다른 사회에서라면 동일한 교육 수준과 연령의 사람들이 법 의식이 다르고 법 수행이 다를 것이다. 한 사회에 속해 있으며 교육수준이나 연령이 같은 경우에도 그가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체험의 종류에 따라서 그들의 법 개념이 다를 것이다. 이점에서 법 정서는 더욱 더 다를 것이다.

2. 법 사회화의 구성 요소

법 사회화는 법 의식과 법 수행 행동을 포함한 법적 대처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1) 법 의식

법 의식은 법 인지와 법 정서의 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 인지는 순수한 개념적 인지 차원의 것을 의미하나 법 정서는 법과 관련지은 신뢰감과 법에 대해 가지는 소외감 등의 정서적 차원의 것을 말한다. 법 의식을 조사하려면 법의 개념 인지와 법 정서를 동시에 조사하여야만 법이 포괄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① 법 인지

법 인지는 다른 사회인지의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에 대한 지식과 법 자체나 법 집행기관과 집행인 모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법 인지는 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각과 평가를 말한다. 한편 법 인지는 법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선행연구들의 법 의식 조사는 연구자의 전공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랐으며, 이들이 법 의식을 한 문항씩으로 조사한 것인데다가 연구대상이던 대학생들은 이미 중년을 넘어선 정도로 오래 전에 이루어진 조사이다. 그 동안 사회가 많이 변화했으며 법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장

이 이처럼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의 법의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법 인지를 조사하려면 법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지와 법의 특성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의 특성 가운데 어떤 요소를 더 강조해서 인지하는지도 관심거리이다. 법에는 공정성, 기능성, 강제성, 옹보성, 제재성이 있다. 기능성은 또 정의 구현 기능과 사회유지 기능이 포함된다. 연령에 따라서 이러한 특성 가운데 어떠한 특성을 더 강조해서 인지하는지도 의문이다. 강제성, 옹보성과 사회유지 기능을 주로 의식하는지, 아니면 법의 강제성이나 타율적 제재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의 사회유지 기능을 주로 의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의 특성 인지도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정신조작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집행을 법 자체가 수행한다고 보는지, 법 집행 기관이나 집행인인 판·검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에 걸쳐 수행된 조사(이수성, 1984; 임희섭, 1974)가 모두 1970, 80년대 수행된 것들이며 두 연구가 모두 법 의식의 한정된 세부 영역의 조사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의식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조사 영역의 제한성 이외에도 조사 대상이 대학생들에 편중되어 있어서 그 연구 결과를 청년 후기 내지는 성인기의 법 의식으로 볼 수 있을 뿐 청소년들의 법 의식을 측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인지가 민감하게 형성되어가는 청소년들의 법 의식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아동기, 청소년기와 청년 후기의 법의식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 중, 고, 대학생들의 법의식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엄밀하게 종단적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횡단적 조사를 하는 것으로라도 연령에 따른 발달의 경향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법 정서

법 의식은 법 인지와 정서를 포함한다. 인지가 명백한 정보처리적 판단기능이라고 본다면 정서는 법에 대한 인지에 더하여 그것의 기능과 평가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인식이다. 법 정서는 법 자체와 법 집행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소외감 등을 의미하는데 이 정서는 현재 한국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에 대한 정서는 법 인지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법에 대한 인지가 증가하면 법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인지와 정서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관련될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을지 모른다. 법 인지와 법 정서가 관련될 것임을 가정하는 것은 다른 사회과학 주제에서도 인지가 정서와 관련되어 의식을 형성한다는 보고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 인지와 법 정서가 달리 형성될 수도 있다. 법에 대한 지식과 인지 수준이 증가하여 법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신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법 정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사람에 대한 신뢰와 법 소외의식을 포함한다. 법 정서 가운데 법 소외감은 앞에서 말한 사회인지 발달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으로 단순히 설명되지 않는 것, 사회경험의 장(場)에 따라서 다른 정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③ 법적 대처

법적 대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과 더불어 법에 따른 행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지 모른다. 아직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고 대처행동을 보일 기회가 없어서, 또 어떤 경우는 그러한 책임을 질 연령이 안된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발

적 사고나 우연한 일로 자신이 책임질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법적으로 대처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대처방법을 준비하게 하기 때문이다. 법 사회화의 주요 기능은 이것이라 보겠다. 한국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조사의 필요성이 크다.

위에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았듯이 법 사회화는 아래와 같은 틀에서 조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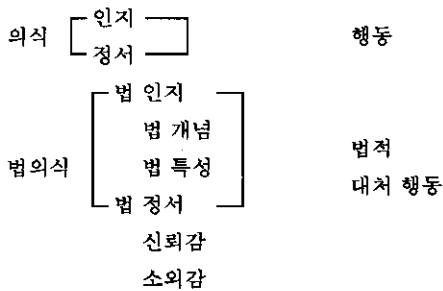


그림 1. 법의식과 법적 대처행동의 관계 모형

이러한 연구모형에서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가 도출되었다.

(연구문제 1) 아동과 청소년의 법 인지는 어떠한가? 이들의 법 인지에 미치는 인구배경변수의 영향은 유의한가?

(연구문제 2) 아동과 청소년의 법 정서는 어떠한가? 이들의 법 정서에 미치는 인구배경변수의 영향은 유의한가?

① 아동과 청소년의 법에 대한 신뢰감은 어떠한가? 이에 미치는 인구배경변수의 영향은 유의한가?

② 아동과 청소년의 법 소외감은 어떠한가? 이에 미치는 인구배경변수의 영향은 유의한가?

(연구문제 3) 아동과 청소년의 법 수행행동은

어떠하며 이들의 법 수행 행동에 미치는 인구배경변수의 영향은 유의한가?

(연구문제 4) 아동과 청소년의 법 인지, 법 정서와 법 수행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가?

III. 연구방법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199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00명과 대학생 147명으로 모두 634명이다. 연령은 8세부터 22세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남자는 325명(51.0%)이고 여자는 312명(49.9%)이다. 부의 학력은 중졸 84명(13.2%), 고졸 276명(43.3%), 대졸이 246(38.6%)이다. 모의 학력은 중졸이 153명(24%), 고졸이 323명(50.7%), 대졸이 125명(19.6%)이다. 본인들이 응답한 사회계층은 상류는 41명(6.4%), 중상류는 371명(58.2%), 중하류는 194명(30.5%)이고 하류층은 17명(2.7%)이다.

조사도구

본 연구는 설문을 이용한 조사연구로서, 법 의식을 조사하는 도구는 중심 과제와 부수 과제로나뉜다. 우선 중심과제는 법 인지 측정도구와 법 정서를 나타내는 법 신뢰감과 법 소외감 측정도구를 포함한다. 법 특성 인지 과제는 이미 임희섭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주로 사용했다. 임희섭은 법의 특성을 법의 집행성, 보편 공정성, 당위성, 옹호성과 강제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법의 특성을 불변성, 규정성, 계약성, 개연성, 징벌성, 옹호성과 강제성으로 분류했다. 불변성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늘이 정해준 길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규정성은 '옛날에는 도리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을 묘사하는 일일이 법으로 정해 놓은 것 같다' 등의 문항이다. 계약성은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만들어 낸 계약과 같은 것이다' 등의 예이다. 법의 개연성은 '법 중에는 좋은 법도 있고 나쁜 법도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예이다. 법의 징벌성은 '법이라는 것은 주로 죄지은 사람을 벌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가 예이다. 그리고 법의 옹호성의 문항 예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법을 어긴다는 것은 나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이다.

법 정서를 나타내는 법 신뢰감과 법 소외감도 구도 마찬가지로 이미 임희섭의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단지 형식적 조작기 아동들에게 맞추도록 문항의 용어를 고려해 법 신뢰감 설문은 6 문항, 법 소외감 설문은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수 과제로는 임희섭의 조사에서 있듯이 법 사회학에서 관심을 가진 문제들로서 준법 이유와 그의 추론, 실제 법 제도에의 관여 정도와 문제나 위기상황에서의 법적 대처방법을 조사하는 과제이다.

조사문항은 원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가능한 한 쉬운 말로 풀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게 준비되었고, 추론사태도 초등학교와 대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사태를 주었다. 일례로 법에 대한 것과 학교의 규칙에 대한 문항이 같이 구성되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과 학교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에 대한 문항이 동시에 조사되었다. 후자는 전자와 같은 내용을 묻는 문항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규칙을 안 지키는 이유를 다른 아이가 안 지키는 이유 응답에 투사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 상황은 첫째 불량상품을 산 경우,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친 반 친구를 알게 되었을 경우, 셋째 근무하거나 잘 아는 회사에서 공해물질을 몰래 버린 것을 안 경우, 넷째 갑자기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는 상황

이다.

조사 절차

사회계층이 편중될 것을 우려해서 서울시 강북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조사가 가능한 학급을 학교에서 선정했다. 학년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다. 대학은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4년제 남녀 공학을 선정하였으며 개론 강의 수강생을 통해서 성별은 물론이고 학과가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였다.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대학원 학생 5명을 훈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는 중심과제와 부수과제의 조사로 구성된다. 중심과제 조사는 지필식으로 법 인지와 법 정서조사인데 법 인지는 법 개념과 법 특성인지를 문항으로 조사한 것이다. 법에 대한 개념 조사는 임희섭, 이수성과 마찬가지로 법 용어에 대한 연상어를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법이란 용어를 들으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빈 종이에 자유응답을 쓰도록 했다. 다 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지필식으로 법 특성인지 문항에 대해서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법정서 설문과 부수과제의 설문에 응답하도록 했다.

위기상황에서의 추론은 일상생활에서 당면한 문제상황에 자유 응답하게 한 것이다.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빈 16절 크기 종이에 자유롭게 가능한 대처방법을 모두 쓰도록 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법 인지

법 인지에는 법이란 용어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연상하는가를 가지고 법에 대한 개념을 분석했다.

1) 법 용어 연상

법이라는 말을 듣고 자유롭게 연상했다고 응답한 604개의 자유연상어를 보면, 대략 45가지 범주의 응답인데 이 응답을 용어 의미의 관계로 묶어 보면, 5가지 의미군으로 나뉜다. 5개의 의미군은 법의 집행성, 보편 공정성, 당위성, 옹보성과 강제성이다. 이들이 연상한 것은 주로 법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법에 대해 연상하는 용어는 법의 집행성(8.8%), 보편 공정성(6.3%), 당위성(19.6%), 옹보성(23.2%)과 강제성(21.2%)이다.

법의 집행성은 법원(3.3%), 검사(0.2%), 판사(1.9%), 판검사(0.2%), 변호사(0.5%), 경찰(2.8%)에 의해서 집행되는 제도(8.8%)로서 나타난다. 보편타당성은 도덕(0.6%), 정의(2.4%), 평등(1.3%), 보편적이고 공정성(2.0%)의 사회이념을 담은 제도로 표현되었으며, 법의 당위성은 법을 국가(0.9%)의 통치방법(0.6%)으로서 국민(0.6%)을 질서(4.2%)와 의무(0.2%)를 명시한 것으로 그에 복종하고(13.0%)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되었으며, 법의 옹보적 특성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범법자(5.7%)로 징죄받아야 하는 무력한 존재(0.9%)로서 처벌받고(9.7%) 감옥에 간다(7.5%)는 응답으로, 법의 강제성은 법은 불공정하고(1.1%), 냉혹하며(2.8%),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9.7%)인 부정적 응답으로 나타났다.

법의 특성에 대한 연상어의 특성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는데($\chi^2=91.98$, $df=16$, $p<.001$), 초등학생은 법의 당위성, 중학생은 옹보성,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법의 강제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연령이 증가하면 인지능력이 증가하므로 법의 특성 가운데 중요하게 의미화하는 부분이 다른데 이는 사회인지 발달론에 의해서 설명된다.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 규범으로서 법을 인지하고 청소년 초기에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표 1. 학교별 법 연상어의 특성

학교 법의 특성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 학교	대학 교
집행성	13	12	12	18
보편타당성	5	10	7	18
당위성	60	28	15	22
옹보성	46	69	19	14
강제성	17	39	27	49
계	141	158	80	121

때 자신이 받아야 하는 옹보를 중요하게 인지하나 청년기에 이르면 개인과 법의 관계를 조망하여 법이 개인의 의사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정적 기능을 인지한다.

2) 법 특성 인지

법의 속성상 제약률인지 아니면 불변률인지, 법을 죄와 벌의 차원에서 볼 것인지, 악법과 선법이 혼재하는지를 임의성과 동일한 문항을 제시해서 응답자의 법 특성에 대한 인지 점수를 제시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법이 사람의 도리, 즉 인륜을 제도로 구체화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법이 사회 계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 사람이 만든 법이므로 법은 완전할 수 없으며 때로 잘못 만들어진 법도 있음을 인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처벌적이고 옹보적 성격을 인지하는데 이 응답 빈도는 응답자의 평균점수를 가지고 기재한 것이며 본 조사 대상의 연령 범위가 상당히 넓으므로 이 응답 경향을 일반화할 수 없다. 단지 이러한 인식이 연령 증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법 인지 응답을 통계분석해 보니 연령($F=33.712$, $df=4$, $p<.0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법 인지에 연령집단 별로 각각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이 추후분석(Scheffe')결과 밝혀졌다.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의 법 인지가 다르다.

연령이 높을수록 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초등학생($M=3.493$, $SD=.592$)이 가장 긍정적으로 법을 인지하는 반면, 그보다는 중학생($M=3.142$, $SD=.567$)이, 고등학생($M=3.127$, $SD=.472$), 대학생($M=2.816$, $SD=.440$)의 순서로 법 인지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 결국 연령이 증가하면 법의 부정적 특성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령에 따른 응답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문항은 법의 불변성을 말하는데 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서로 동의 정도가 낮아진다. 법이 사람들이 살아갈 도리를 성문화(成文化)한 것이라는 문항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동의한다.

셋째 문항은 법의 계약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높게 동의한다. 악법이 존재할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인지한다. 법의 처벌적 특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게 인지한다. 경한 범법행동도 불충(不忠)이란 생각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 정도가 낮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근대적 법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법 인지와 관련 변수

법 인지를 통계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거주지($F=8.454$, $df=2$,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검증 결과, 대도시와 농촌 응답자들의 법 인지가 다르게 밝혀졌다. 즉 대도시 거주자($M=3.21$, $SD=0.59$)는 농촌 거주자($M=2.84$, $SD=0.54$)보다 법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

법 인지 응답은 사회계층($F=6.076$, $df=3$, $p<.001$)에 따라서 의미있게 다르다.

상($M=3.42$, $SD=0.61$), 중상($M=3.22$, $SD=$

표 2. 법 특성별 응답 비율 (%)

학교	초 교		중 교		고 교		대 학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불 변 성	65.8	11.1	44.7	23.4	31.0	29.0	9.4	48.3
규 정 성	35.2	23.1	41.9	24.7	52.0	14.0	40.3	24.2
계 약 성	77.2	10.2	76.1	5.4	92.0	2.0	89.3	0.1
개 연 성	55.2	19.3	74.6	12.4	87.0	4.0	87.8	3.4
징 별 성	50.5	29.1	43.8	35.1	41.0	32.0	25.5	38.9
응 보 성	69.3	17.1	42.8	26.7	38.0	22.0	19.6	45.9

0.56), 하($M=3.22$, $SD=0.47$), 중하($M=3.05$, $SD=0.62$) 계층의 순으로 법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Scheffe'검증 결과, 상층과 중상층, 또한 상층과 중하층의 법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한마디로 사회경제적 생활 수준이 낮으면 법에 대한 인식이 낮고 반대로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의 응답자들이 법에 대해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2. 법 정서

법 정서는 법의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감과 법으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1)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감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요즈음 판사들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듯하다(찬성 35.8%, 반대 17.0%).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선 경찰에 알리겠다(찬성

25.8%, 반대 44.8%) 검찰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듯하다(찬성 34.1%, 반대 26.7%). 경찰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 같다(찬성 19.8%, 반대 45.3%). 변호사는 자신의 이익에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찬성 32.6%, 반대 32.8%), 재판해도 별 수 없고 돈이나 시간이 너무 들므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겠다(찬성 63.9%, 반대 19.4%).

응답자 대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인적 대행자가 운데 판사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다. 그러나, 경찰, 검찰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뢰가 낮으며, 법 집행기관인 법원에 대해서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연령대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판사, 경찰, 검찰과 변호사들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감은 응답자의 연령 변수($F=50.77$, $df=4$, $p<.0001$)에 따라서 유의하게 다르다. 초등학교(M=3.51, SD=.64)과 중학생(M=3.01, SD=.68), 고등학교(M=2.78, SD=

.63), 대학생(M=2.57, SD=.55)의 순으로 신뢰감이 낮아진다. 추후검증(Scheffe')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생과는 나머지 집단이 모두 유의하게 다르고, 중학생은 대학생과 다르다. 하지만 중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은 동질적이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감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유의하게 다르다($F=6.05$, $df=2$, $p<.01$).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촌의 순으로 신뢰감이 낮아진다. 추후검증(Scheffe')에 따르면 대도시(M=3.06, SD=.75)보다 농촌 거주자(M=2.65, SD=.62)의 신뢰감이 현저하게 낮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는 아버지의 학력과는 무관한데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F=6.74$, $df=2$, $p<.01$)가 있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다. 추후검증에 따르면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M=3.23, SD=.81)인 경우는 중졸(M=2.89, SD=.71)이거나 고졸인 경우(M=3.03, SD=.71)와 각각 다르다. 그러나 중졸 어머니와 고졸 어머

표 3. 법 집행기관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

(%)

문항	전체		초교		중교		고교		대학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요즈음 판사들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듯하다.	35.8	17.0	50.0	12.1	33.0	21.3	36.0	19.0	20.8	16.8
억울한 일이 생기며 우선 경찰에 알리겠다.	25.8	44.8	61.4	17.8	47.3	26.6	36.0	27.0	25.7	37.8
검찰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듯하다.	34.1	26.7	48.5	16.3	27.4	31.7	14.0	38.0	6.8	59.5
경찰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 같다.	19.8	45.3	36.5	21.3	20.5	51.4	7.0	50.0	5.4	68.5
변호사는 자신의 이익에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32.6	32.8	55.4	23.1	37.6	25.8	16.0	35.0	8.8	55.1
재판을 해도 별 수 없고 돈이나 시간이 너무 들므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겠다.	63.9	19.4	23.6	60.8	14.4	76.6	14.0	71.0	23.6	48.0

니를 둔 자녀의 신뢰 정도는 동질적이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감은 응답자의 사회계층에 따라서 다르다($F=6.99$, $df=3$, $p<.0001$). 상층($M=3.39$, $SD=.68$), 하($M=3.29$, $SD=.88$), 중상($M=3.06$, $SD=.72$), 중하($M=2.87$, $SD=.72$)의 순으로 신뢰감이 낮아진다. 추후검증(Scheffe')에 따르면 중상과 중하, 중하와 상층간 신뢰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억울한 일을 경찰에 알리겠다는 경찰에 대한 신뢰감과 판사에 대한 신뢰감은 검찰, 변호사에 비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학생들이 검찰,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들의 준법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그들에 대한 공정성 내지는 신뢰감이 적다는 것이 두드러진 사실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사법부에 호소하여 재판하면 될 것인데 실제로 재판을 피하는 이유를 물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재판을 피하는데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를 돈이 너무 많이 든다(33.7%), 절차가 복잡하다(31.6%),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26.1%),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4.5%)는 것으로 꼽는다.

② 법적 소외감

법 제도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지를 몇 문항으로 조사해 보았다. 요즘은 필요없는 법이 너무 많은 것 같다에는 찬성(38.9%)이 반대(23.2%)보다 높다. 요즘 세상에는 법대로만 사는 사람은 약지 못하다는 평을 듣는 것 같다는 문항은 찬성(51.2%)이 반대(15.7%)보다 훨씬 많다. 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니까 결국 국민이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찬성이 42.0%, 반대는 33.6%이다. 요즘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보다 법을 더 잘 지키는 것 같다는 문항에는 찬성이 55.1%나 되어 특권층의 예외를 지적하고 있다. 법은 빈부귀천 없이 공

평히 다루어져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은 것 같다에 찬성이 77.7%나 된다. 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요즘 세상에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는 문항은 찬성이 78.4%로 금력이 법에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어떤 때 보면 법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문항에도 찬성률(64.6%)이 높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다(법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듯하다)는 문항에도 찬성(65.3%)이 훨씬 높다.

③ 법적 소외감과 관련 변수

법적 소외감은 법 자체가 만인에게 공정하지 못하고 빈곤하고 힘없는 사람보다는 금전, 권력 있는 사람에게 더 약하여 결국 그들의 이익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유발된다. 응답자들은 법적 소외감을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다.

법적 소외의식이 연령변수($F=43.717$, $df=4$, $p<.0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법 소외의식에 연령집단 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추후분석(Scheffe')결과 밝혀졌다. 즉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이 모두 다르다. 초등학교생($M=3.24$, $SD=.59$), 중학생($M=3.60$, $SD=.56$), 고등학생($M=3.82$, $SD=.49$), 대학생($M=4.13$, $SD=.18$)의 순서로 법 소외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서 결국 연령이 증가하면 법의 소외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 인지 능력이 높아져서 결국 소외감 인지도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법적 소외의식이 거주지($F=7.80$, $df=2$,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추후분석(Scheffe')결과에 따르면 법소외 의식이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촌이 각각 다르게 밝혀졌다.

생활환경의 열악성 정도에 따라서 법에 대한 소

표 4. 법적 소외감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

(%)

문항	전 체		초 교		중 교		고 교		대 학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요즘은 필요없는 법이 너무 많은 것 같다.	38.9	23.2	32.8	30.8	39.8	27.4	45.0	19.0	42.3	11.4
요즘 세상에는 법대로만 사는 사람은 약지 못하다는 평을 듣는 것 같다.	51.2	15.7	34.8	21.7	40.9	18.6	61.0	15.0	79.2	4.7
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니까 결국 국민이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42.0	33.6	65.3	22.1	48.1	24.1	27.3	41.4	14.1	56.4
요즘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보다 법을 더 잘 지키는 것 같다.	55.1	17.1	59.1	17.7	51.1	16.7	53.0	18.0	57.4	16.9
법은 빈부귀천 없이 공평히 다루어져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은 것 같다.	77.7	7.7	60.3	17.1	74.9	8.0	96.0	0.0	93.9	0.0
요즘 세상에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큰 것 같다.	78.4	12.7	60.1	26.9	84.0	11.7	86.9	5.1	93.3	1.3
어떤 대 보면 법은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64.6	15.6	53.5	46.5	85.6	14.4	92.9	7.1	96.1	3.9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다.	65.3	13.8	68.1	31.9	80.4	19.6	91.5	8.5	95.3	4.7

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학생($M=3.93$, $SD=.55$), 중소도시 학생($M=3.77$, $SD=.58$), 대도시 학생($M=3.58$, $SD=.60$)의 순서로 법 소외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서 결국 환경이 박탈된 정도에 따라서 법에 대한 소외적 인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응답자의 가정 환경을 결정짓는 요인 가운데 아버지의 학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예상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적 소외감은 아버지의 학력($F=11.13$, $df=2$, $p<.0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추

후분석(Scheffe')결과 밝혀졌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중학생 이하($M=3.82$, $SD=.54$), 고등학생($M=3.66$, $SD=.58$), 대학생($M=3.49$, $SD=.62$)의 순서로 법 소외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 결국 개인이나 그가 속한 가정 환경이 풍요로운 경우에는 사회나 법 제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덜하나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외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F=12.12$, $df=2$, $p<.0001$)이 응답자의 소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법적 소의의식이 응답자의 계층($F=6.70$, $df=3$, $p<.001$)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추후분석(Scheffe')결과에 따르면 중하($M=3.76$, $SD=.58$)와 중상($M=3.54$, $SD=.60$), 중하와 상층($M=3.44$, $SD=.61$)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특히 중하계층의 법에 대한 소의감이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법에 대한 인지에서 중하계층이 하층보다도 더 부정적이었는데 소의의식도 가장 높다. 하층은 학습된 무력감으로 인해 포기하여 불만을 느끼지 못하나 상대적 소의감을 민감하게 느끼는 듯하다.

3. 부가적 결과

1) 준법 이유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를 임회섭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물었다. 응답자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6.6%),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애국자니까(3.1%), 법을 잘 지켜야 사회가 발전하니까(24.6%), 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4.4%), 법은 관청의 명령이니까 지키지 않으면 귀찮은 일을 당하므로(7.5%), 법을 지켜야 이익이 생기니까(2.4%), 내가 법을 안 지키면 남이 손해를 보니까(14.8%),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12.4%), 법을 지킴으로써 보호를 받는다(16.6%)고 응답했다. 법이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

준법 이유와 교칙을 지키는 이유는 같은 것일 것인가를 본 연구에서 비교했다. 일상적 준법과 학교 교칙을 지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교칙을 지키는 이유를 물었다. 친구들이 교칙을 지키는 이유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9.6%),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25.3%), 안 지키면 벌을 받으니까(24.5%), 학교 생활의 질서를 위해서(21.8%), 서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15.9%)이다.

타인이 규칙, 즉 법을 지키는 이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의 질서 유지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다.

타인에 대한 준법 이유와 나의 준법 이유가 일치하는지는 흥미롭다. 나의 준법 이유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6.3%),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35.6%) 안 지키면 벌을 받으니까(18.2%), 학교 생활의 질서를 위해서(20.7%), 서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17.4%)이다. 나의 준법이유를 언급한 범주가 타인의 준법 이유와 유사하나 타인의 입장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타인과 사회집단을 고려한 응답이 많았다. 타인의 준법이유는 다분히 타율적으로 지각하는 반면에 자신의 준법이유는 자율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

2) 법 수행 및 대처

법 의식만 가지고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실제 수행을 알 수 없다. 법 제도에 어떻게 관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수행의 종류 및 정도와 실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① 법적 수행

우선 법적 수행은 법 제도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법 제도에의 참여는 법 제정 상황에 참여, 법 개정의 발안 등 몇 가지가 가능한데 청소년들이 가능한 대안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실제로 법 수행의 경우에 어떠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입법시에 부당한 법을 국회에 진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찬성 46.8%, 반대 23.2%), 일단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관청을 상대로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찬성 70.1%, 반대 10.3%), 실제로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찬성 48.7%, 반대 25.6%). 법이 관(官)과 힘있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으로

표 5. 법 제도에의 관여 문항별 응답 비율

문항	학 교		초 교		중 교		고 교		대 학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만일 국회에서 내게 불리하 거나 억울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진정을 해서라도 못 하도록 막아야 한다.	46.8	23.2	58.1	21.7	46.0	26.7	40.0	25.0	38.3	20.1
관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관청을 상대로 해 서 고소하겠다.	70.1	10.3	63.1	15.2	71.7	9.6	85.0	7.0	68.5	6.7
관청을 상대로 해서 고소한 다고 해도 민간인이 이긴다 는 것은 아마 힘들 것이다.	48.7	25.6	39.9	29.3	48.4	31.4	53.0	20.0	58.8	16.9
나보다 훨씬 유력한 사람과 법적으로 따지려고 든다면 결국은 나에게 손해가 돌아 올 것이다.	54.5	24.9	47.2	33.0	52.7	28.2	56.6	21.2	65.8	13.4

간주한다(찬성 54.5%, 반대 24.9%).

구체적으로 연령 동 인구배경 변수에 따라서 이
러한 경향은 다를 것으로 가정되었으나 실제 자료
의 분석에서 연령, 거주지,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법 수행 태도는 사
회계층에 따라서 유의하게 다르다($F=4.72$, $df=3$,
 $P<.01$). 상층($M=3.68$, $SD=.76$), 중하($M=3.$
 65 , $SD=.76$), 하($M=3.56$, $SD=.86$), 중상($M=$
 3.44 , $SD=.71$)의 순으로 낮아진다. 추후검증
(Scheffe')에 따르면 중상과 중하 계층 간에 수행
능력이 다르다. 이처럼 계층에 따라서 법에 대한 정
서가 다를 뿐 아니라 법 제도에의 관여 태도가 다른
것은 굳이 갈등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계층에 따
라 법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환경, 즉
장(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이론
에서 주장한 바로써 설명되어진다. 체험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심
리적 환경도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법 수행 태도가 달리 형성된 것이다.

2) 법적 대처

법 사회화에는 법에 대한 인지와 정서 이외에
법적 대처가 중요하다. 응답자에게 실제 상황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응
방법을 조사했다. 문제 상황은 청소년들이 일상생
활에서 당면하는 네 가지 상황으로서, 첫째 불량
상품을 산 경우, 둘째 반 친구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을 안 경우, 셋째 근무하는 회사에서 공해 물질
을 몰래 버린 것을 안 경우, 넷째 부모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고아가 된 경우이다. 앞의 두
가지 상황은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상황이
며 후자의 두 가지 상황은 흔히 당면하는 상황이
아니고 어쩌다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다. 특히 네 번째 상황은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
고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생의 위기를 맞아서 어
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려고 만든 상황이다. 이 각
각의 상황별로 응답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
펴 보았다.

일상생활 상황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불량상품을 샀을 때 그 상점을 찾아가 말을 해도 한 번 사건 것이니 모른다고 잡아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 적극적 대응에는 공식 기관에 고발하거나 상점주인을 대면해서 투쟁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소극적 대응에는 다시 그 상점에 가지 않거나 그 물건을 사지 않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무심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의 응답자들은 경찰에 고발하겠다(13.0%), 끝까지 상점 주인하고 따지겠다(24.5%)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그 상품은 다시 사지 않거나 그 상점에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48.5%)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소수가 한 번 사건 것이니 어쩔 수 없다(5.5%)고 포기했다.

동일한 맥락의 상황으로 재직하는 회사에서 공해물질을 몰래 강 속에 버리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했다.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에 고발하겠다(32.8%), 회사에 항의하고 고치도록 건의하겠다(54.2%), 소수는 소극적 대응으로 남의 회사에서 그렇다면 고발해도 내가 다니는 회사인데 할 수 없다(4.6%), 다른 회사와 경쟁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2.1%), 그리고 극소수는 고발하면 내게 불이익이 올테니 그럴 수 없다(3.2%)는 이기적 생각에서 무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개인에게 피해를 덜 주는 개인의 잘못을 알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조사했다. 우리 반 친구 중에 남의 돈을 훔친 아이가 있는 걸 알았다면, 대부분이 본인에게 충고하겠다(54.2%), 경찰에 고발하겠다(1.3%), 선생님께 말씀드리겠다(30.8%), 다른 친구에게 알린다(6.0%)는 등의 적극적 대응을 응답했다. 소수만이 개인의 문제로 보고 그럴 수 있으니 내버려 두겠다(4.7%)고 응답했다.

법의식은 법이 있음과 법의 특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피상적 법의식에 머무르는 것이다. 심층적 법의식은 법 제도 안에서 스스로 적용하고 대처

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위기를 맞아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었다.

영식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영식이란 동생들과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영식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그일을 모두 적어 보기 바랍니다. 그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적어보십시오.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한 내용을 유사한 내용으로 범주화하였다. 응답 범주는 대체로 사고처리해서 보상을 받겠다(39명, 0.4%), 국가 사회기관의 보조를 받겠다(105명, 11.91%), 자립해서 일하겠다(344명, 39.0%), 열심히 잘 살아 성공하겠다(134명, 15.2%), 친척이나 이웃 등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겠다(259명, 29.4%)로 나누어진다. 독자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경우(478, 54.2%)나 가까운 사람이나 공적 부조를 받겠다는 경우(364, 41.3%)도 많았다.

구체적으로 연령집단별로 응답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 보겠다. 사고처리해서 보상을 국가나 사회기관으로부터 받겠다는 생각은 초등학교(25.6%)들과 대학생집단(33.3%)에서 더 빈번하다. 부모가 없는 고아로서 국가나 사회기관의 보조를 받겠다는 생각은 초등학교(35.2%)와 중학교(34.3%)에서 빈번한 응답이다. 대학생들도 21.9%가 된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초등학교(41.7%), 중학생(23.2%), 대학생(18.9%), 고등학교(15.4%)의 순이다.

한편 스스로 자립하여 일하겠다는 응답자는 중학생(34.1%), 초등학교(25.9%), 대학생(23.6%), 고등학교(16.0%)이다. 열심히 살아 성공하

겠다는 중학생(32.1%), 고등학생(25.4%), 초등학생(23.9%), 대학생(18.7%)의 순이다.

그런데 응답자들의 응답 가운데 법적 대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사실로 미루어 아직 응답자들에게 심층적 법 의식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법 교육이 법 제도의 기술에 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문화된 법을 가르치기 보다는 살아있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법 교육의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4. 법 의식 간의 상관성

법 의식은 법 인지와 법 정서 및 수행과 대처로 이루어진다. 이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주요한 과제이다. 법 의식 사이의 관계를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법 인지와 법적 소외감의 관련성을 논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이 자료에는 부적 관계를 시사하나 유의성 검증 상에서 유의하지 않아서 둘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논리적 관계가 실제 자료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법 인지 문항이 법의 긍정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법 인지와 법 집행기관에의 신뢰감 사이에는 정적인 유의한 관계가 밝혀졌다. 법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경우에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은 법적 소외감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법 집행기관인 판사, 변호사, 검찰에 대한 신뢰감이 낮을 경우에 법적 소외감은 높다. 한편 법에 대한 소외감은 법 수행감과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법적 소외감이 높으면 법 수행감이 더 높다. 다시 말하면 법적 소외감이 깊으면 법제도를 이용해 방어적 대처를 하려 한다. 그뿐 아니라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높으면 법

표 6. 법 의식간 관계

	법 인지	법적 소외감	법 집행 기관에의 신뢰감	법 수행감
법 인지	1.000			
법 소외감	-.091	1.000		
법 집행 기관에의 신뢰감	.405**	-.204**	1.000	
법 수행감	.026	.319**	-.089	1.000

수행감이 낮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이 법 제도상의 방어적 대처를 부추긴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논의

지난 십 여년 동안 청소년기 법 의식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본연구는 청소년들의 법 의식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고, 특히 법 인지와 법 정서를 살펴 보려는 목적에서 법 개념, 법 특성 인지와 법 신뢰감과 법 소외감이 어떠한지를 살펴 보았다. 또한 법 인지, 법 정서간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도 동시에 살펴 보았다.

부수적 과제로서 청소년기 준법 이유, 청소년들이 가상적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초, 중, 고, 대학생 63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결론내릴 수 있다.

a. 법 인지

법 용어와 연상된 용어를 통해서 아동들은 법의 집행성, 보편 공정성, 당위성, 옹보성과 강제성을 연상하였다. 특히 법의 강제성과 옹정성을 높게 연상한다.

법의 집행성은 법원이나 검사, 판사, 경찰 등 집행되는 제도를 의미하고, 보편타당성은 도덕, 정의, 평등 등의 사회이념을 담은 제도로 표현되며, 법의 당위성은 법을 국가의 통치방법으로서 국민

을 질서와 의무를 명시하여 그에 따라야 한다고 정의한 것이다. 법의 이러한 측면은 법 제도 자체의 보편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한 것이다.

이와 달리 법의 옹보성과 강제성은 법의 부정적 특성을 명시한 것이다. 법의 옹보적 특성은 범범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개념화한 것이다. 또한 법의 강제성은 법은 불공정하고, 냉혹하며, 부패의 소지를 제공하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제도로서의 부정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인지가 어디까지나 그가 속한 사회의 역사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순형, 1994)을 고려해서 설명한다면 법의 강제성과 옹보성은 어디까지나 지난 3,4,5,6공화국의 독재, 군사정권 등의 정권연장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용되었던 법의 부끄러운 일모를 개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아제를 비롯한 인지발달심리학자들은 어린이가 처음에는 규칙을 고정불변의 것이며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규칙이 가변적이며 합의에 의해서 변경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개념화한다고 주장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사고의 유연성이 커지므로 규칙을 제정한 의도, 그것의 다른 측면, 즉 규칙의 사회적 필요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법이 구성원 간의 약속으로서 선의의 많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도덕과 정의의 말단제도로써 법을 개념화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처럼 법이 독재나 군사정권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차례 변경되어 온 사회상황에서 성장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서구의 인지발달심리학자들의 예측대로 개념화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오히려 법의 숨겨진 얼굴을 더 알게 됨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킬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법에 대한 부정적 인

지는 인지 능력이 증가하고 교육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점차 감소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법의 당위성, 중학생은 옹보성,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법의 강제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아동기에는 자신의 행동 규범으로서 법을 인지하고 청소년 초기에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신이 받아야 하는 응보를 중요하게 인지하나 청년기에 이르면 개인과 법의 관계를 조망하여 법이 개인의 의사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집행되는 부정적 현상을 인지하고 있다.

법이 속성상 계약률인지 아니면 불변률인지, 법을 죄와 벌의 차원에서 볼 것인지, 악법과 선법이 혼재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이 사람의 도리, 즉 인류를 제도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개념화한다. 동시에 법이 사회 계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 사람이 만든 법이므로 법은 완전할 수 없으며 때로 잘못 만들어진 법도 있음을 인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처벌적이고 옹보적 성격을 더 인지하고 있다.

법의 불변적 특성에 대한 인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증가한다. 인지발달심리학자들의 예측대로이다. 특히 법의 계약성은 형식적 조작이 가능하다고 피아제가 주장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높게 동의한다. 불변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악법이 존재할 가능성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인지한다.

법 인지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높고,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아질수록 높다. 대도시에 살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성숙한 인식을 하는데 이는 주변의 생활환경에서 법을 통한 해결의 사례를 보거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므로 법 문화에 쉽게 접하기 때문인 듯하다.

b. 법 정서

법 정서를 법 집행 제도에 대한 신뢰감과 소의

감으로 나누어 조사해 본 결과를 두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들은 법을 집행하는 대행자가운데 판사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다. 그러나, 경찰, 검찰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뢰가 낮으며, 법 집행 기관인 법원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신이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고등학교생, 대학생의 순으로 높아진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불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은 중하계층과 중상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감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유의하게 다르다.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촌의 순으로 불신감이 높아진다.

둘째 법 소외의식이 높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특권층의 범법이 빈번하며 법은 빈자와 부자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며 법이 권력이나 돈의 위력에 예속되어 있다고 느낀다.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법의 혜택을 받고 손해를 많이 보는 반면에 부자와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의 비호를 받는다고 느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법적 소외의식이 강하다.

법적 소외의식이 생활환경과도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장 법적 소외감이 높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지역의 청소년들의 소외의식이 높다. 결국 환경의 박탈 정도에 따라서 법에 대한 소외의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의 학력에 따라서도 법적 소외감이 다르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학생 이하, 고등학교생, 대학생의 순서로 법 소외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 결국 개인이나 그가 속한 가정 환경이 풍요로운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법 제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덜하나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외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부모의 교육수준과 거주지역은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므로 법적 소외의식은 청소년의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하계층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소외감이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법에 대한 인지에서 중하계층이 하층보다도 더 부정적이었는데 소외의식도 가장 높다. 하층은 학습된 무력감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에 속하나 중하계층은 계층에 따른 불만이 가장 높은 계층으로 판단된다.

법에 대한 지식과 정서가 법 인식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인식은 문제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기본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법에 대한 인지와 실제 상황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몇 문제 상황을 주고 응답자의 대응방법을 조사했더니 상황에 따라서 대처방법이 다르다. 소비자 개인과 상점의 문제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소극적인 대응방법을 택했다.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팽배해 있다. 그런데 회사의 공해 물질 투척이라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상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고발 등 적극적 대처 방법을 택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서 개인에게 피해를 덜 주는 개인의 잘못을 알았을 때, 대부분이 본인에게 충고하겠다는 사적 해결방법을 택했다. 이는 공적 대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c. 법 인지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감의 관계
인지가 신뢰감과 같은 인식에 선행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연구결과에서도 법 인지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감은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경우에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다. 반면에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감은 법적 소외감과 또한 깊이 관련된다. 법 집행기관인 판사, 변호사, 검찰에 대한 신뢰감이

낮을 경우에 법적 소외감은 높다. 법에 대한 소외감은 법 수행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법적 소외감이 높으면 법 수행감이 더 높아져 법적 소외감이 깊으면 법제도를 이용해 방어적 대처를 하려 한다. 한마디로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이 법 제도상의 방어적 대처를 부추긴다고 하겠다.

법의 긍정적 특성을 인지하는 것은 정의의식과 동일한 인지 기제일 것임을 시사받는다. 정의감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감과도 연관이 깊을 것이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정의감이 높으면 법 인지가 높으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신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d. 법적 대처

법의식은 법이 있음과 법의 특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피상적 법의식에 머무르는 것이다. 제대로 된 법 사회화라면 법적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법 제도 안에서 스스로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연구의 대상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법적 대처 능력이 낮다. 아직 청소년들이 막연한 수준에서 법 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는 본격적인 법 의식이 부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갈등도 법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일이 일반화되지 않았음과 동시에 가정에서 아동·청소년들의 법적 대처에 대해 준비시키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식적 교육기관에서의 법 교육이 법 제도의 기술에 그치는 수준일 뿐 살아있는 법 교육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문화된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살아있는 법을 가르쳐야 개인이 법적 적응양식을 획득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법 교육의 문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본 연구는 십오 년 이전에 실시된 두 편의 선행 연구뿐으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되었다. 두 선행 연구의 조사대상이 대학생 중심으

로 본 조사대상과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상황에서 본 연구도 한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법 의식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논의에 그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시발 연구로서 의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를 기점으로 보다 세련되고 정교한 논의를 담은 후속연구들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윤정(1991). 법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문용린(1991). 법의식발달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및 교정 교육적 시사. 서울민주문화 아카데미, 민주문화논총, 2권, 6호, 21-44.
- 안경환(1993). 법이라는 이름의 전차. 서울 : 교육과학사.
- 안경환(1994).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고시계.
- 이수성(1984). 한국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25, 2, 68-94.
- 이순형(1994). 정치사회화 : 사회인지와 현실 참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희섭(1974).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15, 1, 33-55.
- Chaffee, S. H. and Yang, Seung-Mock(1990). Communication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Ichilov, O. (Ed.),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 New York : Teachers College, Culumbia University. Teacher College Press, 1990.
- Cohn, E. S. and White, S. O.(1990). *Legal Socialization : A study of norms and rules*. N.Y. : Springer-Verlag.
- Kohlberg, L.(1979). Moral stages and moraliz-

ation: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In T. Lickona(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Rest, J. R.(1983). Morality. In J. Flavell and E. Markma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Cognitive development*(pp. 556-629). New York : John Wiley & Sons.

The Relationship among Legal Cognitions, Legal Emotions, and Legal Performances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

Ahn, Kyongwhan · Moon, Younglin
Dept. of Private Law · Dept. of Education

Hwang, Kyungsig · Yi, Soonhyung
Dept. of Philosophy ·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investigate legal cognitions, legal emotions and legal performanc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s the subjects, 199 primary school, 188 middle school, 100 high school and 147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and questionnaire survey was adopted.

The results are : (1) They associated the term 'law' with such five words as execution, universal fairness, duty, retribution and compulsion. (2) Concerning legal emotion, the sense of trust varied according to the age, residential area, mother's education level, and social status of the respondents. The sense of alienation also differed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age. The older had more severe sense of legal alienation. Residential area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ult, as well as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respondents' parents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3) The performance level identifi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respondents' legal behavior was generally low, but those who were affiliated with higher social class performed more actively in terms of law.

Also the relationship among legal cognition, legal emotion, and legal performanc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evealed.

Key word : legal cognition · legal emotion · legal performance · sense of legal alienation